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8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이수진 · 민병덕 · 김정호
송옥주 · 김문수 · 장종태
남인순 · 서영석 · 최혁진
용혜인 · 전진숙 · 백혜련
박희승 · 김 윤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하 “필수유지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중단없이 유지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동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쟁의

행위를 보장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최근 의료계에서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의 신장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는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조화시
킬 수 있는 법률적 기제가 미비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의 공백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
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
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3) 보
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
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4) 이에 따른 단
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
주함으로써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 간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과 건강 및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필수유지의료행위)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2.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3. 제1호와 제2호의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기준(이하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 간에 연합하여

조직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인단체”라 한다) 및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단체 간에 연합하여 조직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단체”라 한다)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 등 단체행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체행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정하여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제4항에 따른 근무계획을 이행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때에는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근무계획의 세부내용 및 근무계획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함에 있어 환자, 의료인 등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공의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9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9조의2(필수유지의료행위) ①</u> <u>이 법에서 “필수유지의료행위”</u> <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의료행위 중 정지·</u> <u>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u> <u>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u> <u>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u> <u>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u> <u>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u>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u>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u> 2. <u>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u> <u>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u> <u>석</u> 3. <u>제1호와 제2호의 의료행위를</u> <u>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u> <u>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u> <u>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u> <u>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u> <u>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u> <u>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유지</u>

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기준(이하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 간에 연합하여 조직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인단체”라 한다) 및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단체 간에 연합하여 조직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단체”라 한다)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 등 단체행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체행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에 부합하는 근무계획을 정하여 단체행동 개시 전까지 각 소속 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가 제4항에 따른 근무계획을 이행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때에는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단체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근무계획의 세부내용 및 근무계획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함에 있어 환자, 의료인 등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필수유지의료행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양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공의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u>자</u> ③ <u>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88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한</u> <u>자</u> 4. (현행과 같음) 제92조(과태료)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제5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u> <u>근무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u> <u>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	--